

# 노 / 동 / 안 / 전 / 정 / 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구성 및 운영 방법 등 마련(안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5까지 신설)

- (1) 법률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노·사동수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원·도급사업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운영한 것으로 같음함에 따라 동 협의체의 설치대상·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 (2)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노사협의체 설치대상으로 하고, 노사협의체는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과 사용자위원(해당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및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으로 구성하여 2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함.
- (3) 건설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함으로써 사업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 산업안전 및 위생지도사 검정기관 변경(안 제33조의12)

- (1) 국가자격시험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2) 산업안전 및 위생지도사 시험실시기관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함.
- (3) 국가기술자격시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체계적인 검정관리 및 운영이 기대됨.

####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3)

- (1) 법률개정으로 노사협의체 심의·의결사항을 이

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2)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노사협의체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근로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3) 법령위반에 대하여 적절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법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의 실시시기 및 내용 등 개선(안 제92조의5)

- (1)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의 실시시기 및 내용 등이 노동부령으로 위임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노동부고시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규칙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2) 사업주는 화학물질 등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및 취급주의 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함.

- (3)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를 투명화 함에 따라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제도 개선(안 제94조)

- (1)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30일 이내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송부하나, 사업주는 60일 이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토록하고 있어 지방노동관서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이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음.

- (2)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업주는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출기준 초과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토



록 하되, 사업주가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는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동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이 초과한 사업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 마련**  
(안 제97조의4 신설)

(1) 법률개정으로 지방노동관서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작업조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측정결과가 현저히 달라지거나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 등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의장이 직접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또는 허용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시설·설비의 개선 및 작업중지 등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함.

(3) 사업주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개선(안 제100조 및 별표 13)**

(1) 현행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 검사항목의 경우 해당 유해인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하기에 미흡한 검사항목이 있는 반면, 유해인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는 상관이 없는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경우도 있음.

(2) 유해인자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신체기관별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 등의 세부 검사항목을 개선함.

(3) 유해인자로 인하여 직업병에 걸릴 위험에 있는

근로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안 제 105조)**

(1)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결과를 사업주에게 직접 제공함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함.

(2)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사업주에게는 질병의 걸릴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및 작업전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만 제공토록 함.

(3)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병력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보조 및 지원의 제한(안 제 143조의2 신설)**

(1) 법률개정으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된 금액을 환수하고, 환수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보조·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이 필요

(2) 정부의 보조·지원 후 5년 이내 사업주가 보조·지원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3년간 보조·지원을 제한하고, 목적외 용도로 보조·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시설·설비의 중대한 결함 등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1년간 제한하되 이를 2년 이내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2년간 제한함.

(3)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보조·지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인 보조·지원금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요건 개선(안 별표 7)

(1) 현행 38개소의 지정교육기관 중 안전분야 교육기관이 33개소로 보건분야의 민간전문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교육기관 인력요건에 보건분야 전문인력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2)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요건 중 총괄책임자에 산업의학과 전문의와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사를 추가하고, 일반 및 기술분야에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추가함.

(3) 산업보건분야의 민간전문기관이 지정교육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직업병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조정(안 별표 8)

(1) 현재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2시간(사무직은 매월 1시간)이상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교육실시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2) 사업주는 분기 6시간(사무직은 분기 3시간)이상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분기별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정측정기관의 인력요건 강화(안 별표 12)

(1) 지정측정기관의 인력요건으로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대신 산업위생관리기술사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업주에게 질 높은 작업환경개선 방안을 조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기술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2) 사업장의 위탁을 받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측정기관은 반드시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를 1인 이상 선임토록 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측정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3) 지정측정기관 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의 질 제고 및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인력요건 강화(안 별표 14)

(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유해인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판정할 때 사후관리 및 업무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2)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요건에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는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함.

(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건강진단의 부실판정을 방지하고 특수건강진단의 내실화가 기대됨.

▲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기준 개선(안 별표 15의2)

(1) 건설업 평균재해율보다 낮은 건설업체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및 심사를 면제하고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평균재해율 이하라 하더라도 대형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확인·심사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2)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기 직전년도에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3) 2인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를 자율안



전관리업체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율안전관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건설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처분기준의 개선(안 별표 20)

(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 및 판정업무를 할 경우 업무정지 3월에 처하고 있으나, 진찰 및 판정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없는 자가 동 업무를 수행할 경우 건강진단 부실 및 근로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2) 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 및 판정의 건강진단업무를 행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토록 함.

(3)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부실판정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산업사고 실시간 문자전송 서비스 개시

노동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대사고 발생시 관련단체 및 사업장 관계자에게 실시간 문자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전파하는 “재해사례 전파시스템”을 시험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붕괴, 낙하 등의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즉시 관련단체 및 사업장 관계자에게 SMS를 통해 그 사실을 전파하고, 재해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 등을 E-mail을 통해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해사례 전파시스템으로 제공된 재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재해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정리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알리기로 하였다. 동시 2명이상 사망재해, 신공법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재해, 폭발사고 등에 대해 동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고, 우선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석유화학공장 등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 100대 건설업체 등 1,853명에 대해 제공하고, 그 외에도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실시간으로 재해사실을 전파할 수 있게 되어 각 사업장에서도 즉시 대응교육 등 동종사고 방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자율재해예방 파트너십 협약 체결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배호득)은 2007. 9. 11 관내 노사 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 신청 업체인 LG전자(주) TV/모니터 사업장(대표 남용)과 노사 자율재해예방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체결은 2007년부터 노동부에서 300인 이상 대형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사 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와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협력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체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앞으로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협약체결 사업장은 LG전자(주) TV/모니터 사업장에 대해서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 및 감독을 유예하게 되고, 프로그램 우수 이행 시에는 수범사례로 선정하여 홍보하며, 산업안전보건관련 정부 훈·포상시 우선 추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